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할 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본세의 최대 30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과 납부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납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 당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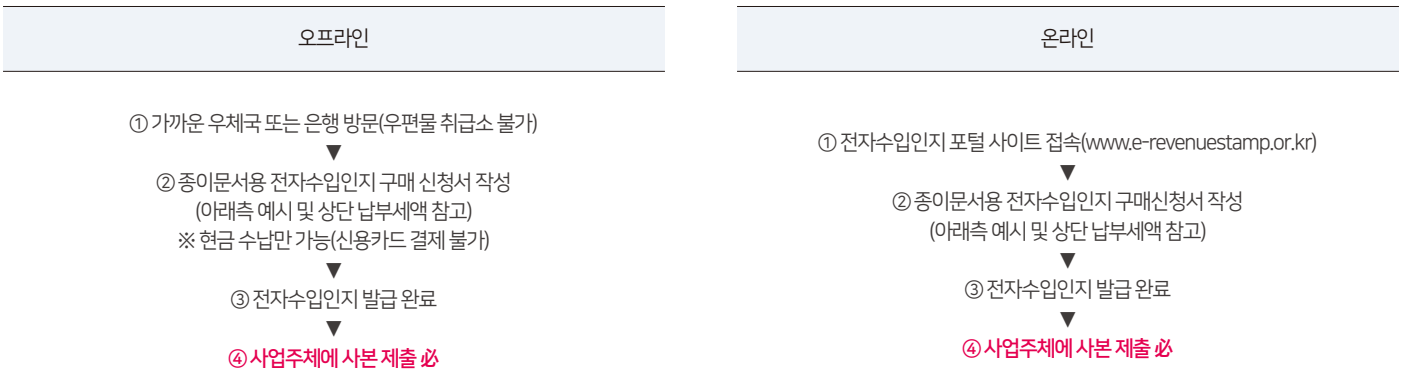
■ 납부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 계약당사자간에 서명을 할 때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납부세액

과세문서	세액	수입인지가격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용도	<input type="checkbox"/> 인지세 납부용 <input type="checkbox"/> 행정수수료용	
금액	대 수	<input type="checkbox"/> 대당발급
구매자 성명 (상 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구매자 정보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종이수입인지 교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전자수입인지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우체국에서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목적 : 전자수입인지 발행·판매 및 판매업무처리
 2. 제공대상 개인정보 :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20 년 월 일 생년 (서명/인)

1. 구매자 정보는 「수입인지에관한법령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수집함을 알려드립니다.
 2. 용도는 인지세 납부용(예시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글권소외대차, 신용카드 회원신청서 등)과 행정수수료용(예시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안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3. 구매자 정보는 전자수입인지를 직접 구매하는 자에 대한 연락처항을 기재합니다.
 4. 대당발급 : 용도와 금액이 같은 대당(10,000여 미만)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선택
 ※ 단, 대당발급을 선택한 경우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발급 가능

구매

1 납부정보입력
2 입력정보확인
3 구매결과확인 및 발급

※ 인지세 과세문서 및 제약을 알려드립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안내]

-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용(예: 부동산 등기, 지분상 등기, 위임 및 도급계약 등)과 행정수수료용(예: 민원 피상장 등)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용역서 발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 권리수입인지는 구매 후 최소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구매 후 적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무효액, 영수표(사인 등)를 통해 판매가 가능합니다(판매 수수료 등 과세한 사항은 '서비스안내' → '비용방납 안내' 참조)
- 전자수입인지는 간접 구매하여 제공에 참여하여도 아니 구매자가 가능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판매 내역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됩니다.

번호	과세문서 종류	금액	건수	합계금액
1	---선택---	---원---	0	---원
2	---선택---	---원---	0	---원
3	---선택---	---원---	0	---원
4	---선택---	---원---	0	---원
5	---선택---	---원---	0	---원

합계금액 원 총건수 건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